

『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신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 - (현행) 「정신보건법」 → (개정)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복지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규를 현행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